

의안번호	제 36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280회)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4월 2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
----------	-----

제출연월일 : 2009년 4월 2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재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09. 2. 6)됨에 따라, 공동시설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P 인하  
(안 59조제1호)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공동시설세 납세 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생략)</p> <p>1. <u>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u></p> <p><u>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0.5</u>  <u>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u>  <u>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u>  <u>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u>  <u>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u>  <u>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u></p>	<p>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현행과 같음)</p> <p>1. <u>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u></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과세표준</th> <th style="width: 50%;">세율</th> </tr> </thead> <tbody> <tr> <td>6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1000분의 0.4</td> </tr> <tr> <td>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1000분의 0.5</td> </tr> <tr> <td>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1000분의 0.6</td> </tr> <tr> <td>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1000분의 0.8</td> </tr> <tr> <td>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td> <td>1000분의 1.0</td> </tr> <tr> <td>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td> <td>1000분의 1.2</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2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③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